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협동과정 학생회칙

[제정 2023. 8. 15.]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1. 본회의 명칭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협동과정 학생회로 한다.

제2조 (목적)

1. 본회는 보건학협동과정의 교육 사명과 목표를 바탕으로 재학생의 연구 능력 배양을 위한 연구지원,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류 활성화, 교육자와 봉사자 양성을 위한 봉사 활동 등의 자치활동을 통해 보건학협동과정 구성원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1. 본회는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의과대학에 위치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보건학협동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석사, 박사, 석·박통합 학위과정의 학생으로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2. 본회의 정회원은 보건학협동과정 석사, 박사, 석·박통합 학위과정 재학생이며, 준회원은 정회원 이외 연구 수료생 등으로 한다.
3. 보건학협동과정 석사, 박사, 석·박통합 학위과정 재학생은 다음 각호의 기간에 정회

원이 된다. 다만, 학기 중 휴학한 자는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자격이 변경된다.

1) 1학기 재학생: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학기 재학생: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 (자치단체)

1. 본회는 보건학협동과정 구성원이 활동하는 동아리·후원회 등의 자치단체를 포괄한다.
2. 자치단체 대표는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3. 자치단체 대표의 임기는 학생회 임기와 동일하다.
4.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은 제4조 회원자격과 동일하다.
5. 자치단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는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와 동일하다.

제7조 (겸직 금지)

1. 본회는 다음 각호의 직에 대한 회원의 겸직을 금지한다.
 - 1) 보건학협동과정 학생회장
 - 2) 보건학협동과정 후원회장
 - 3) 보건학협동과정 동아리 회장
 - 4) 그 밖에 자치단체의 대표 자격이 부여되는 직책

제8조 (사무 처리)

1. 본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2.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사무처리 행위자를 공고한다.

제9조 (기록물 관리)

1. 본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훼손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3. 본회의 기록물은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회원에게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특정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본회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열람·활용할 수 있다.

제3장 학생회

제10조 (구성 및 직무)

1. 본회의 학생회는 학생회장과 임원으로 구성된다.
2. 학생회장은 학생회의 모든 업무를 관리한다.
3. 임원의 직무는 정책, 학술, 홍보, 총무 등으로 구분하여 학생회장이 부여한다.

제11조 (자격)

1. 학생회장은 본회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2. 학생회의 임원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3. 학생회장의 대행자는 정책 담당자로 한다.

제12조 (임기)

1. 학생회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 (총회)

1. 본회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2. 본회 총회는 정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3.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개의하며, 총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4. 임시회의는 학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학생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5. 총회 의장은 개의일 일주일 전에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학생회 임원 회의)

1. 학생회의 임원 회의는 필요시 학생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2. 임원 회의는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요건)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표결 방법)

1. 표결은 기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 의결을 통해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선거

제17조 (선거)

1. 본회의 선거는 정회원 및 준회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정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18조 (선거관리위원회)

1. 본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학생회의 총무가 겸임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선거 방법과 시기)

1. 본회의 선거는 매년 2월 중에 온라인 투표로 시행한다.

제20조 (당선)

1. 당선은 유권자 중 최다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2. 단일 후보일 때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당선으로 인정한다.

제21조 (재·보궐선거)

1. 본회의 재·보궐선거는 당선 무효, 효력 상실 등으로 학생회장이 공석이 될 경우에 실시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2조 (후보 불출마)

1. 출마하는 후보가 없을 시, 보건학협동과정 주임 교수가 임시 학생회장과 임원을 임명하고 임시 학생회가 본회를 운영한다.

제23조 (선거 시행 세칙)

1.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재정

제24조 (자산)

1. 본회는 유·무형의 동산, 부동산, 권리 등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의 자산이다.
2. 본회는 자산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이 본회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25조 (수입)

1. 본회의 운영비는 학생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학생회비는 1인 기준 정규 1학기 50,000원(금오만원)으로 한다.
3. 학생회비 납부 시기는 당해연도 학생회가 정한다.

제26조 (회계연도)

1.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 1)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 2)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제27조 (지출)

1. 본회의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총무가 관리하고 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지원

제28조 (경조사)

1. 본회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정회원 및 준회원 본인의 결혼, 직계 자녀의 경조사 또는 친부모 장례에 대하여 '보건학협동과정 학생회' 명의의 축하기 또는 근조기를 지원한다.

제29조 (학술대회)

1. 본회는 회원의 연구 능력 함양을 위해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회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한다.
2. 학술대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해연도 학생회가 정한다.

제30조 (자치활동)

1. 본회는 회원의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의 자치활동을 주최하고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2. 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해연도 학생회가 정한다.

제31조 (자치단체)

1. 본회는 자치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2.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해연도 학생회가 정한다.

제8장 회칙 개정

제32조 (개정의 발의)

1. 본회의 회칙 개정은 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재학생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된다.

제33조 (개정안 공고)

1.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학생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 2) 신·구문 대비표
 - 3)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34조 (개정 의결)

1.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학생회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회칙 개정안을 의결한다.
2. 회칙 개정은 제15조에 따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칙 개정의 의결은 제16조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35조 (공포)

1.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학생회장은 이를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2. 회칙의 공포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 4) 회칙 개정 찬성자 명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